

제 1448호

2018. 12. 21.

발행인 : 서울특별시강남구청장 정순균
편집인 : 공보실장 송대길
전화 : 02 - 3423 - 5083

구 보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18-2001호 법제처 합동 규칙 자율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 3

고 시

서울특별시 강남구고시 제2018-189호 개포시영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정비계획(경미한 사항)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58

서울특별시 강남구고시 제2018 - 190호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고시 63

발령 65

※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본 구보의 내용은 강남구 홈페이지<<http://www.gangnam.go.kr> (행정정보→행정알림→구보/입법예고)>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게재 의뢰 및 편집문의 (☎ 02-3423-5083 / 모사전송 02-3423-8820)

◎ 구보발간일은 매주 금요일(필요시 수시 발간)이며, 발간일 3일전(화요일)까지 게재의뢰

D-3일 접수

→

D-2일 편집 및 교정

→

D-1일 최종편집

→

D일 발간

※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시행일이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공 람									

강 남 구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18-2001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규칙의 상위 법령 반영을 위해 정비를 추진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8년 12월 21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법제처 합동 규칙 자율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 이유

- 우리구 전체 규칙에 대하여 법제처와 합동으로 전수조사 후 상위법령 조례 제·개정 내용과의 위반, 불일치 사항과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사항, 자치법규 입안기준 위반 및 기타 인용조문 오류 등을 일괄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체계를 확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사항 정비
- 나. 상위법령 및 조례 위반사항 정비
- 다. 법령 근거 없이 규제(권리·의무)사항 정비
- 라. 자치법규 입안기준 위반사항 정비

마. 기타(인용조문 오류 등)사항 정비

3.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1월 10일**까지 강남구청장(참조 :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pitch21c@gangnam.go.kr

2)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26 기획예산과

3) 팩스 : 02-3423-8828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 기획예산과 (전화 : 02-3423-548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www.elis.g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규칙 제 호

법제처 합동 규칙 자율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

제1조(「서울특별시 강남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강남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심의결정하여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를 “의결한다”로 한다.

제2조(「서울특별시 강남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법제사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규”를 “자치법규”로 한다.

제10조 제목 “(입법예고 등)”을 “(입법예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제6조 단서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 입법예고 기간을 20일 미만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기획예산과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입법예고”를 “입법예고”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를 “조례”로 한다.

제14조제1항 단서 중 “포함되어야 하되, 어느 특정 성이 위촉위원 수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를 “포함되어야”로 한다.

제15조제3항 중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를 “의결한다”로 한다.

제3조(「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사무관리 규정」”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

로 한다.

제9조 중 “「사무관리규정」 및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4조(「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서울특별시 강남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를”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무회계 규칙」을”로 한다.

제5조(「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호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한다.

제6조(「서울특별시 강남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1을 제2조의2로 한다.

제7조(「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8조(「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전단 중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기본 조례」”를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기본 조례」”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중 “한국증권거래소”를 각각 “한국거래소”로 한다.

제9조(「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전단 중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징수 조례」”를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징수 조례」로 한다.

제10조(「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세무조사 운영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단서 중 “조세범 처벌 절차법에 의한”을 “「지방세기본법」 제113조부터 제126조까지에 따른”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본문 중 “7일”을 “15일”로,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대상 세목 및 조사사유,”를 “받을 납세자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화재”를 “화재 및 도난,”으로, “심”을 “중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질병·장기출장 등으로 세무조사에 응하는”을 “질병, 중상해, 장기출장 등으로 세무조사를 받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장부·증빙서류가 압수 또는 판단되는”을 “장부·서류가 압수되거나 영치된”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3호까지의 규정”을 “제3호까지”로 한다.

제18조 중 “실시하는 데”를 “실시하기 전”으로, “조사기간을 정하여 착수하되”를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착수하며”로 한다.

제19조 중 “기한까지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특별한”을 “기한 내에 「지방세기본법」 제8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원래의 조사기간”을 “그 사유가 해소되는 날부터 20일 이내로 세무조사기간”으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수색, 영치의 금지)”를 “(수색, 압수 등의 금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데에 조세범처벌절차법”을 “조세범칙조사”로, “일반세무조사(특별조사를 포함한다)시에는 납세의 무자”를 “세무조사 시에는 납세자”로, “영치”를 “압수·영치”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예외로 한다”를 “그리하지 아니한다”로 하며,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방세기본법」 제102조부터 제107조까지의 범칙행위가 진행 중인 경우
2. 범칙혐의자가 도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제2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서류 등을 압수·영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압수·영치증(별지 제3호서식) 및 압수·영치목록(별지 제4호서

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조사공무원이 구세에 관한 세무조사를 마친 때에는”을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치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조사결과를 통지하고자 하는 날부터 부과제척기간”을 “조사결과를 통지하려는 날부터 부과 제척기간”으로, “징수권”을 “지방세징수권의”로, “미만”을 “이하”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폐업으로 인하여”를 “납세자의 소재가 불명하거나 폐업으로”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5. 「지방세기본법」 제88조제4항제2호 단서 및 제96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마친 경우

제32조의 제목 “(조사공무원의 행동수칙 등)”을 “(조사공무원의 수칙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을 “별표에 따라 조사공무원의 수칙”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서울특별시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12조(「서울특별시 강남구립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를 삭제한다.

제42조제1항 중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13조(「서울특별시 강남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각층”을 “각 층”으로, “1천제곱미터이상”을 “1천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일평균”을 “1일 평균”으로, “1회 1톤이상 또는 1주에 1톤이상 배출하는 자로서 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을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토지의”로 한다.

제14조(「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미화원 고용 및 근무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미화원 고용 및 근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4항 중 “향토예비군설치법 및 민방위기본법”을 “「예비군법」 및 「민방위기본법」”으로 한다.

제57조제1항 및 제2항 중 “법정전염병”을 각각 “법정감염병”으로 한다.

제58조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제59조 중 “전염된”을 “감염된”으로 한다.

제15조(「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으로 한다.

제16조(「서울특별시강남구옥외광고물특별정비자금융자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강남구옥외광고물특별정비자금융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강남구옥외광고물특별정비자금융자규칙”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자금 융자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7조(「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4조제1호마목”을 “제74조제8호”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난관리기금 용자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2. 재난관리기금 사업계획서(별지 제4호서식)

제7조제3항 중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

제8조제4항 중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별지 5호서식”을 “별지 7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을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중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시행규칙 제11조”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2조”로 한다.

제18조(「서울특별시 강남구 민영주차장 설치자금 융자 및 보조금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영주차장 설치자금 융자 및 보조금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지명하는”을 “미리 지명한”으로 한다.

제19조(「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를 “의결한다”로 한다.

제20조(「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인사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지방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으로 한다.

제24조의2 전단 중 “「지방공무원법」”을 “법”으로 한다.

제21조(「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준용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22조(「서울특별시 강남구 보안업무 처리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안업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를 “의결한다”로 한다.

제23조(「서울특별시 강남구 전문경력관 임용자격기준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문경력관 임용자격기준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 전문경력관 규정」 제6조제2항”을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6조”로 한다.

제2조 중 “「지방 전문경력관 규정」”을 “「지방전문경력관 규정」”으로 한다.

제24조(「서울특별시강남구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에관한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강남구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제3조 및 제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를 “제9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등)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한원 범위안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직(계·등)급의 재직자를 추가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한다.

제25조(「서울특별시강남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 관한조례시행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강남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3조제4항 중 “보완·시정요구”를 “보완요구”로,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통보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를 “설립준비대표자가 이를 보완한 후에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증을 교부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6조(「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의날 운영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의 날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를 “의결한다”로 한다.

제27조(「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28조(「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무회계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 중 “인건비,여비,일반운영비,복리후생비,업무추진비,지방채원리금,전출금,반환금,행정재산취득”을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지방채원리금, 전출금, 반환금, 행정재산취득”으로, “그 밖에”를 “보조금, 기타”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예산요구서(별지 제1호서식)”를 “예산요구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공유재산조서(별지 제7호서식)”를 “공유재산조서”로 한다.

제22조제1항제5호 중 “사회단체보조금”을 “보조금”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기타 구에서 정한 경비

제23조제2항 단서 중 “매입·제조·운반 등”을 “매입·제조·운반, 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로, “금액이”를 “추정가격”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을 “「지방세기본법」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과징금 등 세외수입의 징수에 있어서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세외수입금 징수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7조제1항 중 “예산담당과장”을 “예산담당과 통합지출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무과장은 18조”를 “통합지출관은 제1항의 세입예산월별징수종합계획서와 제18조”로, “통합지출관, 각”을 “각”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세무관리과장 및 재무과장”을 “통합지출관”으로 한다.

제54조제2항 중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등”으로 한다.

제15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증빙서류는 해당 회계관서에서 원본을 보관하되, 전자적 정보처리시스템에 따라 생성된 문서는 전자적으로 보관할 수 있다.

제15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채권관리관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1조에 따라 채무의 이행기한 15일 전까지 납부의 고지를 하여야 하며, 채권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가 납부기한을 경과하여도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시행령 제112조에 따라 독촉을 하여야 한다.

제152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별지 제105호서식)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부하고, 독촉에 의한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로부터 15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제165조 전단 중 “시행령과”를 “시행령, 시행규칙과”로 한다.

제29조(「서울특별시 회계관계 공무원 직인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회계관계 공무원 직인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 중 “「서울특별시 강남구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로 한다.

제30조(「서울특별시 강남구기록관 운영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강남구기록관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사무관리규정」 제3조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제17조 및 제19조”를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로 한다.

제18조 중 “제14조제1호”를 “제15조제1호”로 한다.

제31조(「서울특별시 강남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제16조의4제1항제2호”를 “제16조의5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영 제16조의4제1항제1호”를 “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제1조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현행	개정안
제4조(회의개최 및 심의) ① (생략)	제4조(회의개최 및 심의)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u>심의결정하여 가</u> <u>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u> <u>다.</u>	② ----- ----- ----- <u>의결한다.</u>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2조 서울특별시 강남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4조(사전협의) <u>법규</u> 의 주관담당관, 실·과장(이하 “주관과장”이라 한다)은 작성하고자 하는 정비안이 법령이나 다른 규정 등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기관의 인가, 승인, 협의 등을 법적 요건으로 하는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관계 부서와의 협의를 필요한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정비안 제출 전에 협의 등을 거쳐야 한다.	제4조(사전협의) <u>자치법규</u> ----- ----- ----- ----- ----- ----- ----- ----- -----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되, 어느 특정 성이 위촉위원 수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15조(회의운영) ①·② (생략)

③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생략)

되어야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5조(회의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의결한다.

④ (현행과 같음)

(제3조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무관리규정」에 따른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책의 투명성 확보와 행정의 책임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 -----.
제9조(준용규정) 정책실명제와 관련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무관리규정」 및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9조(준용규정) ----- -----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

(제4조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현행	개정안
제3조 (재정보증) 제2조에 따른 통합관리기금을 관리·운용하는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를 준용한다.	제3조 (재정보증) ----- ----- -----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무회계 규칙」을 ----- -----.

(제5조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현행	개정안
제2조(위원회 구성 등) ① (생략) ② 사업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3~5배수의 분야별 전문가집단을 해당 분야 학회, 협회, 강남구의회 등으로부터 추천받아 감사담당관에게 통보한다. 다만, 강남구의회 의원은 강남구의회에서 직접 추천한다. <단서신설 2018.11.2.> 1. 2. (생략) 3.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해당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해당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제2조(위원회 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1. 2. (현행과 같음) 3. 「건설기술 진흥법」----- ----- ----- -----

4. 5. (생략)

③ ④ (생략)

4. 5. (현행과 같음)

③ ④ (현행과 같음)

(제6조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현행	개정안
제2조의1 (생략)	제2조의2 (현행 제2조의1과 같음)

(제7조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현행	개정안
제6조(용자대상 선정기준) ① 조례 제4조제1호에 따른 기금의 용도로써 조례 제7조제1항제1호에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2. (생략)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진동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공해배출시설 설치허가 대상자의 경우에는 해당 허가를 받은 자 4. (생략) ② (생략)	제6조(용자대상 선정기준) ① ----- ----- ----- ----- -----. 1. 2. (현행과 같음) 3. 「물환경보전법」----- ----- ----- ----- -----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별표]

조사공무원의 수칙**가. 조사공무원의 기본자세**

- 1)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운영규칙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를 지켜야 한다.
- 2) 조사공무원은 인격의 도야와 조사기법의 개발을 위하여 부단히 연구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 3) 조사공무원은 세정의 최일선 역군으로서 세정의 거울이 됨을 명심하여 항상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공정하고 친절한 자세로 조사에 임하여야 한다.
- 4) 조사공무원은 권위주의적 언행을 삼가하고 납세자의 권익과 편의를 최대한으로 보장하여야 하며, 세무조사로 인하여 정상적인 영업활동이나 사생활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 5) 조사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신의에 좇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6) 조사공무원은 법규를 엄격히 준수하여야 하고 업무집행 과정에서 법령을 무리하게 확대 해석하거나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조사목적과 직접 관계없는 내용이나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서는 아니된다.
- 7)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지득한 비밀은 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조사착수 전 준수사항

- 1)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세무조사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야 한다.
- 2) 납세자의 편의제공을 위한 조사예고 이외에는 조사계획이나 준비조사 내용 등을 조사착수전에 납세자나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3) 조사계획 수립후 실시조사가 착수되기 전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납세자와 접촉하거나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조사진행중 준수사항

- 1) 세무조사를 하는 때에는 반드시 증표를 제시하여야 하며 납세자에게 조사의 목적, 조사대상 선정 이유, 조사기간 및 범위를 상세히 설명하여 납세자가 조사사유를 충분히 납득하도록 하여야 하며 준비된 안내문을 전달하여야 한다.
- 2)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거부하거나 이해를 못할 경우에는 조사권의 근거와 한계를 상세히 설명하여 납세자의 이해를 구하고 그래도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에 따라야 한다.
- 3) 세무조사에 착수한 때에는 그 사실을 보고체계를 통하여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4) 조사공무원은 조사계획에 의한 조사방법, 조사범위, 조사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 5) 조세범칙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납세자의 주택이나 사업장 또는 사무실을 수색·영치하여서는 안되며, 세무조사는 납세자가 제시하는 장부와 증빙서류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다만, 수색하지 않고 조사현장에서 발견된 비밀장부나 증빙서류를 납세자로부터 임의제출 받았을 때에는 즉시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따라야 한다.
- 6) 조사공무원은 근무시간중에만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간외에 조사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상사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 7) 조사진행중 조사사항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어야 하며, 납세자가 이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먼저 문제점에 대하여 긍정적인 자세로 검토하여야 한다.
- 8) 납세의무자가 소명내용이 적법하고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중하게 사과한 후 이를 솔직하게 받아들여 즉시 시정하여야 하며, 납세의무자가 소명내용이 잘못된 경우에는 납세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잘못된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 9) 납세의무자의 이견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판단할 수 없는 사항은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른다.
- 10) 사실관계에 관한 조사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과세근거를 확보하여 추후 불복이나 쟁송을 제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11) 조사공무원은 하루의 조사가 끝나면 납세의무자에게 수고가 많았음을 인사하고, 다음날 몇시에 다시 오겠다는 뜻을 전달하여야 하고, 약속시간은 반드시 지켜야 하며 부득이 이행치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연락하여야 한다.
- 12) 조사공무원은 지시에 따라 매일 또는 격일로 조사사항을 관리자에게 상세히 복명하고 차후 조사방향을 지시받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한다.

라. 조사종결시 준수사항

- 1) 조사공무원이 조사를 종결하였을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조사가 종결되었음을 알리고 조사기간동안 성실히 조사에 협조해 준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하여야 한다.
- 2)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종결한 때에는 신속히 처리하되 고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3)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종결한 때에는 신속히 처리하되 고지 전에 조사내용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 해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4) 납세의무자가 조사내용의 통지를 받고 그 내용에 이의가 있어 이에 대한 해명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 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 5) 조사공무원은 조사과정에서 발견된 법령 및 제도상의 문제점은 이를 시정할 수 있도록 조사복명시 “세법 등 개정건의서”를 계통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예치 목록

일련번호	물 건 명	수 량	제 출 자	소 유 자	비 고

[별지 제3호 서식]

압 수 · 영 치 증

법인명(상 호) :

소재지(사업장) :

대표자(성 명) :

지방세기본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납세자에 대한 별첨목록의 서류 등을 조사기간 동안 당 기관에 정히 압수·영치합니다

예치사유						
예치기관						
예치 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인)
입회인등	소속			성명	(인)	
서명날인거부부기						
년 월 일 강 남 구 청 장						

[별지 제4호 서식]

압 수 · 영 치 목 록					
일련번호	물 건 명	수 량	제 출 자	소 유 자	비 고

유로 인하여 조사를 받기 곤란한 때에는 구청장에게 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화재 그 밖의 재해로 사업상 심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2.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질병·장기출장 등으로 세무조사에 응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증빙서류가 압수 또는 판단되는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③·④ (생략)

제18조(조사기간) 구청장은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데에 미리 조사대상자별로 조사기간을 정하여 착수하되, 조사기간은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하여야 한다.

제19조(조사기간 연장의 제한) 세무조사를 착수한 후 기한까지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구청장은 원래의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0조(수색, 영치의 금지) ① 세무조

-----.

1. 화재 및 도난, ----- 중대

2. ----- 질병, 중상해, 장기출장 등으로 세무조사를 받는 -----

3. ----- 장부·서류가 압수되거나 영치된 -----
4. ----- 제3호까지-----

③·④ (현행과 같음)

제18조(조사기간) -----
-- 실시하기 전-----
-----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착수하며-----
-----.

제19조(조사기간 연장의 제한) ----
----- 기한 내에 「지방세기본법」 제8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그 사유가 해소되는 날부터 20일 이내로 세무조사기간--.

제20조(수색, 영치의 금지) ① 조세법

사를 실시하는 데에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하지 아니한 일반세무조사(특별조사를 포함한다)시에는 납세의무자의 주택 또는 사무실 등을 수색하거나 장부, 서류 등을 영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현행 중인 범칙증거를 발견한 때

2. 비밀장부 등 범칙증거를 발견한 때

② (생략)

<신설>

제30조(세무조사 결과통지) 조사공무원이 구세에 관한 세무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

칙조사-----

----- 세무조사 시에는 납세자-----

----- 압수

· 영치-----.

----- 그

러하지 아니한다.

1. 「지방세기본법」 제102조부터 제107조까지의 범칙행위가 진행 중인 경우

2. 범칙혐의자가 도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서류 등을 압수·영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압수·영치증(별지 제3호서식) 및 압수·영치목록(별지 제4호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0조(세무조사 결과통지)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치면 -----

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조사결과의 통지를 하고자 하는 날부터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 또는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3. 폐업으로 인하여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

<신설>

<신설>

제32조(조사공무원의 행동수칙 등)

① (생략)

② 조사공무원은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공무원의 수칙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

-----.

1. (현행과 같음)

2. 조사결과를 통지하려는 날부터 부과 제척기간-----
--- 지방세징수권의 -----
----- 이하-----

3. 납세자의 소재가 불명하거나 폐업으로 --

4.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5. 「지방세기본법」 제88조제4항제2호 단서 및 제96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마친 경우

제32조(조사공무원의 수칙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별표에 따라 조사공무원의 수칙-----
-----.

<삭제>

(제11조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현행	개정안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 ③ (생략)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u>통할한다</u> . ⑤ (생략)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u>총괄한다</u> . ⑤ (현행과 같음)

(제12조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현행	개정안
제28조(보험가입 의무) 위탁운영단체는 청소년 시설의 관리 및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건·사고에 대비하여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삭 제>
제42조(기록물의 관리) ① 위탁운영단체는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생산된 문서를 「 <u>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u> 」을 준용하여 분류·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42조(기록물의 관리) ① ----- ----- ---- 「 <u>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u> 」----- -----.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 서울특별시 강남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현행	개정안
제3조(폐기물배출자의 재활용이행 및 조치명령)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배출자라 함은 법 제12조의3 및 영 제14조의6의 규정에 따른 배출자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u>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인</u>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2. 폐기물을 <u>1일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거나 1회 1톤이상 또는 1주에 1톤이상 배출하는 자로서 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u>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③ (생략)	제3조(폐기물배출자의 재활용이행 및 조치명령)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1. <u>각 층</u> ----- <u>1천제곱미터 이상</u> ----- ----- 2. ----- <u>1일 평균</u> ----- ----- <u>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토지의</u> ----- -----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미화원 고용 및 근무규칙)

현행	개정안
제31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① ~ ③ (생략) ④ <u>향토예비군설치법 및 민방위기본법에 의하여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시간에 대하여 유급휴가를</u>	제31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u>예비군법</u> 」 및 「 <u>민방위기본법</u> 」----- -----

준다.

⑤ (생 략)

제57조(질병자의 취업제한) ① 법정 전염병, 정신병 기타 산업안전보건 법령에 정하는 질병에 걸린 자는 취업을 제한한다.

② 환경미화원과 동거하는 가족 또는 동거인이 법정전염병에 전염된 경우 또는 그 의심이 있을 때는 즉시 상황을 구청에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

제58조(보고) 환경미화원은 업무상 상병 또는 위험한 전염병이 발생한 것을 알았을 경우에는 즉시 담당공무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9조(재해보상) 환경미화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전염된 경우와 사망하였을 경우 구청장은 근로기준법 또는 단체협약이 정하는 바에 의한 보상을 행한다.

--.

⑤ (현행과 같음)

제57조(질병자의 취업제한) ① 법정 감염병-----

-----.

② -----

----- 법정감염병-----

-----.

제58조(보고) -----

----- 감염병-----

-----.

제59조(재해보상) -----

----- 감염된 -----

-----.

(제15조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현 행	개 정 안
제14조(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 보고)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제14조(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 보고) ① -----

다음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에 따라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생략)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제1항-----
-----.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 서울특별시강남구옥외광고물특별정비자금융자규칙)

현행	개정안
<u>서울특별시강남구옥외광고물특별정비자금융자규칙</u> 제1조(목적) 이 규칙은 <u>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u>(이하 “시조례”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에 의해 광고물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의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u>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자금 융자 규칙</u> 제1조(목적) ----- 「<u>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u>」-----

(제17조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심의요구서

□ 전 명 :

위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첨부서류(각 13부 작성)

1. 현황설명서(예방효과, 긴급상황, 피해상황 등)
2. 조치(사업)계획서(재난예방, 응급조치, 재난복구 등)
3. 조치(사업비)명세서(소요예산 산출서)
4. 기타

○○○(기금사용 부서의 장) (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

□ 건 명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의 의결함.

결 정 내 역

주 제	의 결 사 항	비 고

년 월 일

위 원 장	(인)
부 위 원 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별지 제4호 서식】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관리기금 사업계획서**1. 용자신청인**

- 주 소 :
- 성 명 : (인) (전화번호 :)
- 생년월일 :

2. 재산보유 및 소득형편

- 재산현황(자가, 전세, 월세, 기타) : 환산가 원
- 월소득 : 원
- 가족수 : 명
- 기 타 :

3. 자금사용계획

- 시설물 현황 : (위치, 구조, 면적, 용도, 위해요인 등)
- 자 금 구 분 : 1.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비 등 2. 이주비용
- 세 부 내 역 :

4. 자금상환 계획**5. 용자금의 반환**

재난관리기금 용자금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시행규칙 제9조2항의 규정에 의한 용자목적 외에 사용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용자금의 전액을 상환하겠음.

강남구청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발급번호 제 호

용자대상자 결정 통보서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용 자 금 액	

위 사람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7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자대상자로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우리은행 강남구청출장소장 귀하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발급번호 제 호

용자대상자 결정 통보서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용 자 금 액	
용자구분	1.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비용 등 2. 이주비용 등		

귀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7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자대상자로 결정되었으니 지정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자금을 용자받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 용자조건

1. 용자금상환은 3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이율은 3%의 이하의
금리를 적용합니다.
2. 연체시에는 강남구금고의 연체율을 적용합니다.

【별지 제7호 서식】

상환기간 연장신청서

신청인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소유자 (점유자)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연장기간		연장전		연장후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까지
상환 기간 연장 사유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1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 (인) 추천자 : 동장 (인) 강남구청장 귀하				
<u>구비서류</u> ○ 상환기간 연장 사유를 증명할 서류 첨부				

【별지 제12호 서식】

재난계정자금대하 차용증서

1. 대하금액(총액) 금 원정(₩)
기금·적립계정 : 금 원정(₩)
사업충당금계정 : 금 원정(₩)
2. 기금부분
3. 대하기간
4. 이자율 대하금리
 대출금리
5. 상환조건
6. 기 타

위 금액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하여 재난계정자금의 운용·관리의 위탁에 따른 대하금으로 차용함을 증명하며, 상환조건에 의하여 기일내에 상환할 것을 확인합니다.

일 월 년

차 용 인 : 지점장(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귀하

현행	개정안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① 재난별 소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11조 각 호의 심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심의요구서(별지 제6호서식)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심의요구사항을 심의의결하고 <u>별지 제7호서식</u>에 따른 심의의결서를 작성하며 심의결과를 소관 부서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의 용자신청 및 대상자의 결정통보)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4조제1호마목에서 규정한 용도로 기금을 용자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동장의 추천을 받아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기금 용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재난관리기금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② (생략)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① ----- ----- ----- -----<u>별지 제1호서식</u>----- -----. ② ----- ----- <u>별지 제2호서식</u> ----- ----- -----. 제7조(기금의 용자신청 및 대상자의 결정통보) ① ----- ----- ----- <u>제74조제8호</u> ----- ----- ----- ----- ----- ----- ----- -----. 1. 재난관리기금 용자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2. 재난관리기금 사업계획서(별지 제4호서식) 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심의결과에 따라 선정된 용자대상자의 명단과 용자금액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금고(이하 “구 금고”라 한다)에 통보하고 신청인에게 용자대상자 결정통보서(별지 제3호서식)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용자금의 대출과 대출자의 관리 등) ① ~ ③ (생략)

④ 구청장은 용자를 받은 대출자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관리기금 용자가구 관리카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상환기간의 연장)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상환기간 연장신청서(별지 5호서식)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③ -----

-----별지 제5호서식-----
-----.

제8조(용자금의 대출과 대출자의 관리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별지 제6호서식-----
-----.

제11조(상환기간의 연장) ① (현행과 같음)

② -----

-----별지 7호
서식-----

-----.

③ (현행과 같음)

(제18조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영주차장 설치자금 융자 및 보조금 시행규칙)

현행	개정안
제3조(위원장 직무 등) ①·② (생략)	제3조(위원장 직무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u>지명하는</u>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 ----- ----- <u>미리 지명한</u> ----- -----.

(제19조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규칙)

현행	개정안
제7조(위원회 운영) ① ~ ③ (생략)	제7조(위원회 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u>의결하되,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u>	④ ----- ----- ----- <u>의결한다.</u>
⑤ ~ ⑦ (생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20조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인사 규칙)

현행	개정안
제22조(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등의 합격자의 등록)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자가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u>지방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u> [별표 3]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22조(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등의 합격자의 등록) ① ----- ----- ----- ----- ----- 「 <u>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u> 」-----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4조의2(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 「 <u>지방공무원법</u> 」-----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따라 당연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신규임용에 필요한 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조 이동 2016.12.09.>	제24조의2(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 <u>법</u> ----- ----- ----- ----- ----- ----- -----.

(제21조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현행	개정안
제4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재정법」, 같은 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무회계 규칙」 등 관계 규정을 <u>준용한다</u> .	제4조(다른 법령의 준용) ----- ----- ----- ----- <u>따른다</u> .

(제22조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안업무 처리 규칙)

현행	개정안
제6조(의안의 제출 및 회의) ①·② (생략) ③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u>의결하되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u> . ④ ~ ⑥ (생략)	제6조(의안의 제출 및 회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u>의결한다</u> .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23조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문경력관 임용자격기준 규칙)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 전문경력관 규정」 제6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문경력관의 임용자격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6조----- ----- ----- -----.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지방
전문경력관 규정」에 따른 서울특
별시 강남구 전문경력관 임용에
적용한다.

제2조(적용범위) ----- 「지방전
문경력관 규정」-----

-----.

(제24조 서울특별시강남구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에 관한 규칙)

현행	개정안
제10조(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 조기퇴직예정일 현재 1년이상 20년미만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 및 제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 ----- ----- ----- 제9조에 해당하는 사람 이어야 한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 ① 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는 직(계·등)급별과원수에 따라 직(계·등)급별로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 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등)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 범위안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상위직(계·등)급의 재직자를 추가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 ① ----- ----- ----- ----- 한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25조 서울특별시강남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
관한조례시행규칙)**

현행	개정안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① (생략) ② <u>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u>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① (현행과 같음) <u><삭 제></u>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 ~ ③ (생략) ④ <u>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에 대하여 보완·시정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통보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u>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u>보완요구</u> ----- ----- ----- ----- <u>설립준비대표자가 이를 보완한 후에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증을 교부하여야 한다.</u>

(제26조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의회 운영 규칙)

현행	개정안
제6조(회의 및 의사) ①·② (생략)	제6조(회의 및 의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④ (생략)

③ -----

----- 의결한다.

④ (현행과 같음)

(제27조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현행	개정안
제6조(공유재산심의회의 운영) ① (생략)	제6조(공유재산심의회의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부결된 것으로 본다.	② ----- ----- ----- . <단서 삭제>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8조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무회계 규칙)

현행	개정안
제5조(재무관의 직무 위임) ① 본청의 재무관은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제5조(재무관의 직무 위임) ①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급여 등 인건비,여비,일반운영비,복리후생비,업무추진비,지방	4. -----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채원리금, 전출금, 반환금, 행정재
산취득에 따른 보상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및 이미 교부금액이 결정(재무관
협의)된 경비의 지출

5. 6. (생략)

② (생략)

제9조(예산요구서) ① 제8조의 예산
편성방침을 통보받은 각 기관 주
무자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
도의 예산요구서(별지 제1호서식)
를 2통 작성하여 소속 과장 또는
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지정된
기일까지 예산담당과장에게 제출
하되, 세입예산은 반드시 기획경제
국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② (생략)

③ 재무과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 외에 공유재산조서(별지 제7
호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 다음
각호의 경비에 대하여는 제5조에
규정된 한도에 따라 본청 및 관서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지방채원
리금, 전출금, 반환금, 행정재산
취득-- 보조금, 기타 -----

5.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예산요구서) ① -----

- 예산요구서-----

-----.

② (현행과 같음)

③ -----
----- 공유재산조서-----
-----.

제22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

의 경우는 회계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8조제1항의 일상경비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 일상경비출납원과 합의한다.

1. ~ 4. (생략)

5. 민간이전경비, 사회단체보조금, 보상금, 행사관련경비

6. · 7. (생략)

<신설>

② · ③ (생략)

제23조(세출예산의 집행) ① (생략)

② 각 과장은 공사·제조·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수리·운반 등에 관하여는 재무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소모품의 매입·제조·운반 등의 경우에는 1건당 금액이 300만원 이하에 한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단서 개정 2000·3·10><단서개정 2012.02.17.>

③ · ④ (생략)

제46조(지방세 법규적용) ① 지방세

-----.

-----.

1. ~ 4. (현행과 같음)

5. ----- 보조금 -----

6. · 7. (현행과 같음)

8. 기타 구에서 정한 경비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3조(세출예산의 집행) ① (현행과 같음)

② -----

-----.
----- 매입·제조·운반, 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 -- 추정가격 -----

-----.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46조(지방세 법규적용) ① -----

의 수입 및 반환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과태료 · 과징금 등 세외수입의 부과 · 징수에 있어서 개별 법령 및 조례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47조(자금수급계획) ① 세무관리과장은 각 과 및 관서의 장이 제출한 세입예산월별징수계획서를 종합검토하여 세입예산월별징수종합계획서(별지 제39호서식)를 작성하여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예산담당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재무과장은 18조에 따라 각 과 및 관서에서 제출한 세출예산월별지출계획서와 예산담당과장이 통지하는 세출예산월별 분기별배정계획서를 기초로 하여 세출예산월

----- 「지방세기본법」 및 -----

-----.

②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과징금 등 세외수입의 징수에 있어서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세외수입금 징수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7조(자금수급계획) ① -----

----- 예산

담당과 통합지출관-----.

② 통합지출관은 제1항의 세입예산월별징수종합계획서와 제18조-

별자금지출종합계획서(별지 제40호서식)를 작성하여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통합지출관, 각 과장 및 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세무관리과장 및 재무과장은 추가경정예산 등으로 예산액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54조(채권자의 영수인) ① (생략)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 채권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의 서류를 받아야 한다.

③ (생략)

제150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① ~ ③ (생략)

<신 설>

제152조(채권의 독촉) 채권관리관은 법령, 조례, 계약 기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분기별로 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의 소

----- 각 -----
-----.

③ 통합지출관-----

-----.

제54조(채권자의 영수인) ① (현행과 같음)

② -----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등--.

③ (현행과 같음)

제150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증빙서류는 해당 회계관서에서 원본을 보관하되, 전자적 정보처리 시스템에 따라 생성된 문서는 전자적으로 보관할 수 있다.

제152조(채권의 독촉) ① 채권관리관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1조에 따라 채무의 이행기한 15일 전까지 납부의 고지를 하여야 하며, 채

재를 파악하여 독촉장(별지 제105호서식)을 발부하고 채권확보를 하여야 한다.

<신 설>

제165조(국가규정의 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하는 것 외의 예산, 결산 및 회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이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따르고, 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령 등 정부회계에 관한 기준을 준용한다. <조 이동 2013. 5.31.>

권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가 납부기한을 경과하여도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시행령 제112조에 따라 독촉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별지 제105호서식)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부하고, 독촉에 의한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로부터 15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제165조(국가규정의 준용) -----

----- 시행령,
시행규칙과 -----

----- . -----

(제29조 서울특별시 회계관계 공무원 직인 규칙)

현행	개정안
제3조의2(직인의 관리 등) ① 직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무회계 규칙」 제3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서 지정한 회계관계 공무원이 관리한다. ② (생략)	제3조의2(직인의 관리 등) ① ----- ----- -----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 -----. ② (현행과 같음)

(제30조 서울특별시 강남구기록관 운영 규칙)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략) 5.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이란 「사무관리규정」 제3조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전자문서시스템, 행정정보시스템, 업무관리시스템을 말한다. 제7조(기록물의 생산) ① (생략) ② 기록관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른 조사·연구·검토서, 회	제2조(정의) ----- -----. 1. ~ 4. (현행과 같음) 5.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에 따른 ----- -----. 제7조(기록물의 생산) ① (현행과 같음) ② ----- ----- -----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

의록 및 시청각기록물에 대한 생산등록·관리 기준을 작성·관리 하여야 한다.

제18조(기록물 생산기관 협의) 기록관장은 제14조제1호에 따른 보존기간의 재책정, 보류 또는 폐기 결정 시 생산기관 및 생산부서와 협의를 거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인 기록물평가심의서에 기재하여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8조(기록물 생산기관 협의) -----
----- 제15조제1호-----

-----.

(제31조 서울특별시 강남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현행	개정안
제4조(금연지도원의 위촉) ① 조례 제8조의2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금연지도원의 위촉) ① ----- ----- ----- ----- ----- ----- ----- -----.
1.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u>제16조의4 제1항제2호</u> 에 따른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 ----- ----- <u>제16조의5제1항 제2호</u> ----- -----

2.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영 제16조의4제1항제1호
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
간단체의 장에게 금연지도원 추
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 ④ (생략)

2. -----
-----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

② ~ ④ (현행과 같음)

고 시

서울특별시 강남구고시 제2018-189호

개포시영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정비계획(경미한 사항)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281호(2012. 10. 25.)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고시되고, 강남구고시 제2017-156호(2017. 12. 08.)로 정비계획(경미한 사항)변경 결정 고시된 강남구 개포동 656번지 일대 개포시영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경미한 사항)을 결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1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 결정(변경) 취지 : 주민제안에 의한 정비계획 변경(사학복지시설의 주출입구 확보를 위한 위치변경)

□ 결정(변경) 조서

1. 개포택지개발지구(공동주택)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변경없음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변경

다. 기반시설 결정(변경)조서

라. 공공·문화체육시설

2) 사회복지시설: 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 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1	사회복지 시설	어린이집	개포동 656 일대	490	-	490		위치 변경

■ 건축물의 범위

구 분	건축물의 범위	건 폐 율	용 적 른	높 이
기정	1	60% 이하	200% 이하	7층 이하

■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사 회 복 지 시 설	위치이동	사업부지 내 새로이 설치되는 사회복지시설 (구립 예지 어린이집)의 보행자 및 차량출입 의 개선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위치변경

※ 상기사항 이외 지구단위계획 변경 없음

II.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 정비사업의 명칭: 개포시영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구 분	정비사업의 명칭	위 치	면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기 정	개포시영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 사업	강남구 개포동 656번지 일대	115,910	-	115,910	

3. 정비계획

라.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4) 사회복지시설(변경)

구 분	도 면 표 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 정 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1	사 회 복 지시설	어 린 이 집	개포동 656일 대	490	-	490		위치변경

■ 건축물의 범위

구 분	건축물의 범위	건 폐 율	용 적 른	높 이
기정	1	60% 이하	200% 이하	7층 이하

■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사회복지시설	위치이동	사업부지 내 새로이 설치되는 사회복지시설 (구립 예지 어린이집)의 보행자 및 차량출입의 개선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위치변경

※ 상기사항 이외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없음

Ⅲ. 관계도면 : 강남구청 주택사업과 비치도면과 같음(붙임 참조)

1.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지형도면고시도
2.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지형도면고시도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Ⅳ. 관계서류는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강남구 주택사업과(☎02-3423-609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2> 2.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에 관한 지형도면고시도

□ 정비계획 결정(기정)도



□ 정비계획 결정(변경)도

